

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
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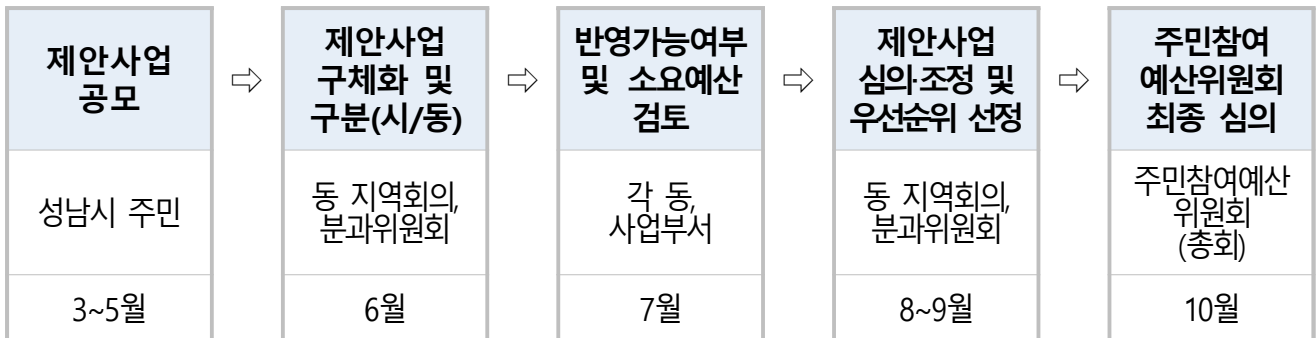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에 의거 의무 시행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·공정성·효율성 제고와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추진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)
- 「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
3. 2026년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 운영 처리절차



- 주민참여예산 질적 내실화 추진

○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한 필터링 강화

-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서 요건(필수요건: 사업위치, 소요예산 등)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제안 확대
- 법령(선거법 등) 저촉 여부 사전 검토
 - 선거법 검토 대상: 기기 및 물품 배부 사업, 행사성 사업 등
- 현장 조사 및 상위/관리 부서 의견조회 필수

- 주민참여예산 불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

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불가기준
-법령(조례·규정포함)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(선거법 저촉 사업) -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단순 민원사업(불법주정차 단속, 대중교통 이용 등) -타기관 소관 사업(교육청, 경찰서, 철도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) -제품 판매등 영리목적의 사업, 특정단체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-개인의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-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장기계속사업 (공영주차장, 다목적 체육관,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등) -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진행사업(공사나 제조 등 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) -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·중복 사업 -인건비·법적 경비·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-국·도비 보조사업, 보조금 지원 사업 -자산성 물품구입 요구 사업 (복합기, 인바디측정기 구입 등) -행정내부 운영 예산 및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·구·동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(예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현수막 게시대 등 시설정비,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,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구입 등) -상위 부서 의견 조회 시,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-일회성 행사·축제성 사업 -최근 3년내에 동일한 대상 또는 대상지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추진중이거나 추진완료된 사업

□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위원 역량 강화

- 신규 위원의 예산학교 교육 필수 이수를 통해 전문성 및 사업 심의 역량 강화

□ 주민참여예산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

-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완료까지 예산과-사업부서-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연계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
- 사업 추진 개선 방안 모색 및 사후관리 통한 차년도 운영계획 보완 및 반영

4. 추진계획

□ 주민 제안 (집중)공모: 2026. 3.~ 5. ※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 내 상시 접수

- 제안자격: 성남시 주민
- 공모규모: 45억원(시 단위 30억원, 동 단위 15억원(동별 3,000만원))

□ 예산학교 운영: 2026. 4. ~ 6.

- 대상: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참여예산에 관심있는 주민
- 내용: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안내
- 추진방법: 경기도 예산학교 또는 온라인 교육영상 활용

□ 제안사업 심의·조정: 2026. 7. ~ 10.

- 사업부서 검토: 법령·조례, 사업 타당성 등 검토 및 사업비 산출
-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사전심의
 - 실무 검토부서 의견청취 및 질의·답변 등 자체 토론
 - 제안사업 심의·의결 및 우선순위사업 선정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(최종심의)
 - 동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사업 종합 심의
- 주민참여예산 예산집행 모니터링
 -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진행사항 점검
 - 사업 대상지 진행 확인 및 제안취지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검토

□ 우수 제안사업 선정: 2026. 11.

- 선정방법: 분과위원회별 최대 2건 추천, 온라인 투표
- 시상내역: 성남사랑상품권 시상(5명 2,300천원) ※노력상 제외

구분	합계	최우수	우수	장려	비 고
선정사업 및 사례금	5명/ 230만원	1명/70만원	2명/50만원	2명/30만원	

※ 많은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정자 외 예산(200만원) 범위내에서 노력상 사례금 지급

5. 행정사항

□ 전 부서공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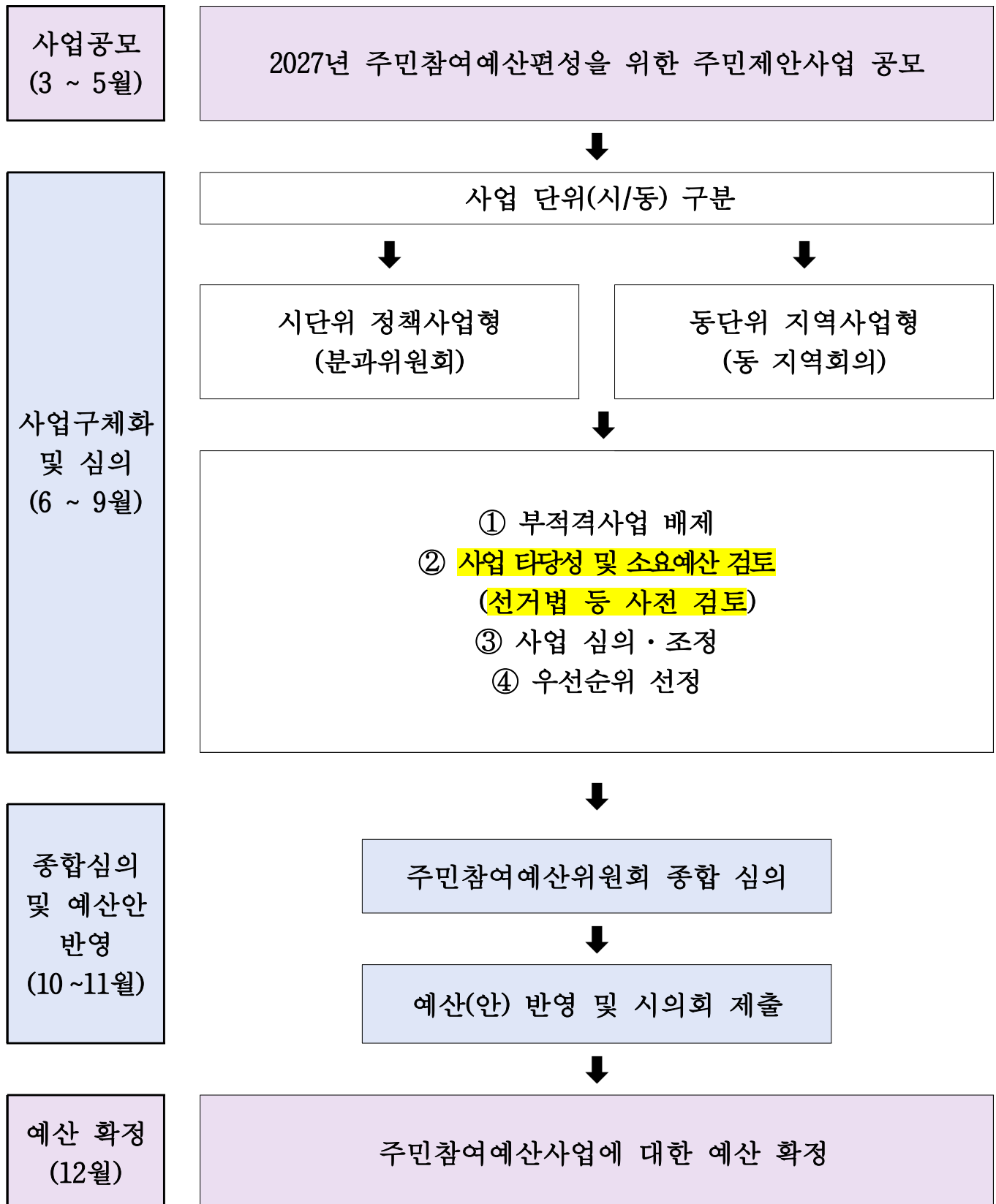
-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사업화 적극 추진
-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요청 시, 사업타당성, 중복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밀히 검토
- 위원회 심의를 위한 부서의견 요구 시,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

□ 동 행정복지센터

-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지원
- 주민참여예산 집중공모 기간 중 접수창구 운영
- 주민홍보 철저(유관단체 회의 및 동 행사 시 적극 홍보)

- 붙임 1. 공모사업 업무체계도 및 일정 1부.
2.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1부. 끝.

【붙임 1】 공모사업 업무체계도 및 일정



【붙임 2】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

